

## 2007년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별 조세지원제도

(중소기업청, 2007. 1.)

### <목 차>

① 창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/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</li> </ul>
② 투자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/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/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/ 환경·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/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/ 임시투자세액공제 /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</li> </ul>
③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/ 연구·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/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</li> </ul>
④ 사업안정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/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/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 / 최저한세 우대적용</li> </ul>
⑤ 구조조정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/ 법인 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/ 법인 전환에 의한 등록세·취득세 면제</li> </ul>
⑥ 지방이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/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/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</li> </ul>
⑦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</li> </ul>
⑧ 기타 중소기업 우대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본접대비 한도 확대 / 분납기한 연장 /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/ 사업소세 감면 /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/ 분양·임대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/ 창업·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</li> </ul>
[별 첨]	2007년 중소기업 지원세제 주요 개정내용

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등에 의한 2007년 조세 지원세제 중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의 각 세부활동 단계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.

참고로,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과 관련한 시행령·시행규칙 등은 2월 이후 확정·공포될 예정이므로, 본 내용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향후 개정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.

① 창업지원

감 면 제 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<p>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</p>	<p>○ 최초 소득발생 후 <u>4년간</u> 납부할 <u>소득세·법인세의 50% 감면</u>(조특법 §6)</p> <p>○ 창업 후 <u>2년내</u>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<u>취득세·등록세 면제</u>(조특법 §119, §120)</p> <p>○ <u>창업 후 5년간</u> 창업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<u>재산세 50% 감면</u>(조특법 §121)</p> <p>*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창업지역과 무관하게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(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일 경우에도 세제지원 가능)</p>
<p><b>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</b> (조특법 §30의 5)</p>	<p>○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, <u>10%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</u></p> <p>- 부동산·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- 증여재산: 30억원 한도 -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: 5억원 - 유흥주점업, 도박장운영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</p> <p>* 일반 상속시 상속전 10년 기간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,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(상속·증여세율: 10 ~ 50%)</p>

② 투자지원

감 면 제 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<p><b>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5)</p>	<p>○ <u>투자금액의 3%</u>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- 대상자산: 사업용 자산, POS,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</p>
<p><b>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</b> (조특법 §5의 2)</p>	<p>○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ERP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<u>순금산입</u></p>
<p><b>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</b></p>	<p>○ <u>투자금액의 7%(대기업은 3%)</u>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- 대상자산 : 공정개선을 위한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,</p>

(조특법 §24)	첨단기술설비, ERP, 전자상거래설비, SCM, CRM, RFID(시행규칙 개정 예정)
<b>환경·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25)	○ <u>투자금액의 3%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- 대상자산 : 공해방지시설, 청정생산시설, 유통산업합리화시설, 수탁기업체의 검사대·연구시설, 산업재해예방시설, 가스공급시설, 광산보안시설, 비상대비시설, 위해요소방지시설, 기술유출방지설비, 해외광물자원개발설비
<b>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25의 2)	○ <u>투자금액의 10%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- 대상자산 : 에너지절약시설, 중유재가공시설, 중수도시설, 절수설비·절수기기
<b>임시투자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26)	○ <u>투자금액의 7%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- 대상자산 : 사업용 자산 등 * 2007년말 일몰시한 종료
<b>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94)	○ <u>취득금액의 7%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- 대상자산 : 종업원기숙사,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, 임대국민주택

※ 중복지원의 배제: 조특법 §5, §11, §24 ~ §26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

### ③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

감 면 제 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<b>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10)	○ 다음의 ①과 ② 중 선택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%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%
<b>연구·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11)	○ <u>투자금액의 7%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<b>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</b> (조특법 §12)	○ 특허권 등 <u>기술취득금액의 7%</u> (대기업은 3%)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
### ④ 사업안정 지원

감 면 제 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---------	-------------

<p><b>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</b> (조특법 §7)</p>	<p>○ <u>지역별·업종별·규모별로 납부할 세액의 5 ~ 30%</u>를 세액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 : 소기업 30%, 중기업 15%</li> <li>- 수도권내에서 제조업 등 : 소기업 20%</li> <li>- 수도권내에서 도소매업·의료업·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 : 소기업 10%</li> <li>-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소매업 등 : 소기업 10%, 중기업 5%</li> <li>- 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사업 : 중기업 10%</li> </ul> <p>* 지식기반산업 : 엔지니어링사업, 부가통신업, 연구 및 개발업,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</p> <p>* 소기업의 범위(종업원 수) : 제조업 100인 미만, 광업·건설업·물류산업·여객운송업 50인 미만, 기타 업종 10인 미만</p>
<p><b>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</b> (조특법 §7의 2)</p>	<p>○ 중소기업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<u>현금성 결제금액의 0.3%(지급 기한 30일 이내) 또는 0.15%(지급기한 31일~60일)</u>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(한도: 법인세(소득세) X 10%)</p> <p>* 대기업은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 포함</p>
<p><b>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</b> (조특법 §101)</p>	<p>○ 상속 증여받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<u>할증평가(최고 115%) 제외</u></p>
<p><b>최저한세 우대적용</b> (조특법 §132)</p>	<p>○ 중소기업은 <u>감면 전 과세표준의 10%(대기업 15% 또는 13%)</u>를 최저한세로 함.</p>

⑤ 구조조정 지원

감 면 제 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<p><b>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</b> (조특법 §33의 2)</p>	<p>○ <u>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·법인세 50% 감면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전환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전환전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1년(공장신설시에는 3년)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</li> <li>: 전환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(시행령 신설 예정)</li> </ul> </li> </ul>

	<p>* 전환전 사업 : 업종제한 없음</p> <p>* 전환후 사업 :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</p>
<p>법인 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(조특법 §32)</p>	<p>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<u>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</u></p>
<p>법인 전환에 의한 등록세·취득세 면제 (조특법 §119, §120)</p>	<p>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<u>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</u></p>

⑥ 지방이전 지원

감면제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<p>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 §63)</p>	<p>○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<u>2년 이상</u>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<u>전부 이전</u>하여 2008. 12. 31.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, <u>이전 후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</u></p>
<p>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 §64)</p>	<p>○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<u>그 소득발생 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·법인세의 50%</u></p> <p>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(조특법 §6 ①)과 동일한 세제지원</p>
<p>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 §12의 2)</p>	<p>○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<u>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·법인세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</u></p>

⑦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

감면제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<p>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(조특법 §8)</p>	<p>○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<u>무상 기증</u>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증자(대기업): <u>손금산입(장부상 잔존가액)</u></li> <li>- 수증자(중소기업): <u>익금불산입</u></li> </ul>

⑧ 기타 중소기업 우대 규정

감 면 제 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기본접대비 한도 확대 (소득세법 §35, 법인세법 §25)	○ 일반법인 : 1200만원 ⇒ <u>중소기업 : 1800만원</u>
분납기한 연장 (법인세법 §64)	○ 일반기업 : 1월 ⇒ <u>중소기업 및 개인 : 45일</u>
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(소득세법 §128)	○ <u>상시고용인 10인 이하인</u> 소규모사업자는 <u>반기별 납부가능</u>
사업소세 감면 (지방세법 §249)	○ <u>종업원수 50인 이하</u> 중소기업은 <u>종업원할 사업소세,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㎡이하인</u> 경우는 <u>재산할 사업소세 면제</u>
부가가치세 납부특례 (부가세법 §26)	○ <u>간이과세자에</u> 대해 <u>부가가치세 세율을 낮게 적용(1.5 ~ 4%)</u>
분양·임대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(지방세법 §280)	○ <u>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</u> 중소기업자에게 <u>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</u> 대해서는 <u>취득세·등록세 및 재산세를 50% 감면</u>
창업·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(지방세법 §276 제3항, §280 ④)	○ <u>창업보육센터 사업자,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등이</u>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<u>취득세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</u>

별 첨

2007년 중소기업 지원세제 주요 개정내용

(1) 지원내용 변경 없이 일괄기한 연장 (2006년 → 2009년)

감 면 제 도	주요 조세 지원 내용
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§5)	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<u>투자한 금액의 3%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 §6)	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<u>4년간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</u>
연구·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(조특법 §11)	연구·인력개발 설비에 <u>투자한 금액의 7%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(조특법 §12 ②)	특허권 등 <u>기술취득금액의 7%(대기업은 3%)</u> 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창투사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 (조특법 §13)	창투사 등이 창업자·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<u>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</u> 대한 법인세 비과세

창투자 출자에 대한 비과세 (조특법 §14)	기관투자자가 창투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<u>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</u>
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§24)	공정개선, 자동화설비, <u>RFID*</u> 등에 투자한 금액의 7%(대기업은 3%)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 * 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 :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·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(2007년 추가 예정)
환경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§25)	위해요소 방지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3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(조특법 §64)	입주 후 <u>4년간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</u>
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(조특법 §72)	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<u>12%로 세율로 저율과세</u>
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(조특법 §94)	기숙사·직장보육시설 등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7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 (조특법 §101)	상속·증여받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<u>할증평가(최고 115%) 제외</u>  * 조특법 조문변경 : 종전 §100의 2 → 개정 §101
창투자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(조특법 §117)	창투자,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자·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<u>증권거래세 면제</u>
임시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§26)	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7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 * 2007.12.31까지 연장(영화관운영업 등 일부 업종 추가)

(2) 신규제도 도입 또는 감면내용 확대

감면제도	종 전	현 행	개정 사유
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(조특법 §8)	<신 설>	○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<u>무상 기증하는 경우</u> - <u>기증자(대기업) : 손금산입</u>	○ 신규 설비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설비지원

		<p>- 수증자(중소기업): 익금불산입</p> <p>* 무상 기준 : 장부상 잔존가액</p> <p>○ 일몰시한 : 2009.12.31</p>	<p>을 촉진하고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</p>
<p>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(조특법 §10)</p>	<p>○ 대기업 -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* × 40%</p> <p>○ 중소기업 : Max{①, ②}</p> <p>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× 50%</p> <p>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× 15%</p> <p>○ 일몰시한: 2006.12.31</p>	<p>○ 대기업 : ①+ ②</p> <p>① 자체 사용 연구·인력개발비 ·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× 40%</p> <p>② 중소기업·대학 등에게 지급한 <u>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</u> ·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× <u>50%</u></p> <p>○ 중소기업 : (현행 유지)</p> <p>○ 일몰연장 : 2009.12.31</p>	<p>○ 대·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상생협력을 유도</p> <p>○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수준의 향상을 도모</p>
<p>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(조특법 §10의 2)</p>	<p>&lt;신 설&gt;</p>	<p>○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<u>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</u></p> <p>* 해당되는 출연금 세부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 예정</p> <p>○ 일몰기한 : 2009.12.31</p>	<p>○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은 수년에 걸쳐 사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귀속시기를 조정</p>
<p>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 §12의 2)</p>	<p>&lt;신 설&gt;</p>	<p>○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<u>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·법인세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</u></p>	<p>○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유치 및 창업 활성화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</p>

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몰기한 : 2009.12.31</li> </ul>	지원
<p>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(조특법 §33의 2)</p>	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(중전사업 폐지후 1년 이내 신업종 개시)</u>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<u>4년간 소득세·법인세 50% 감면</u></li> </ul> </li> <li>- <u>사업전환 요건</u> (시행령 신설 예정) 2년내 총매출액 중 중전업종 매출액을 30%이하로 축소하고, 신업종 매출액이 70% 이상 점유</li> <li>* 전환전 사업 : 업종제한 없음</li> <li>* 전환후 사업 :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</li> </ul>
<p>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(조특법 §85의 2)</p>	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장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<u>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</u></li> <li>○ 일몰기한 : 2009.12.31</li> </ul>	

<p>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(조특법 §104의 12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○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- <u>200억원 공제 및 0.8% 세율 적용</u></p> <p>* 종합부동산세법 적용시 · 40억원 공제, 최고 0.16% 세율</p> <p>- <u>대상업종</u> : 관광호텔업, 종합휴양업, 유원시설업, 스키장업, 대중골프장업, 유통업(유통단지 및 공동 차고지) 등</p> <p>○ 일몰기한 : 2009.12.31</p>	
<p>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제도 최저한세 적용 배제 (조특법 132조)</p>	<p>○ 지방이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(조특법 §63)의 최저한세* 적용</p> <p>* 감면 후에도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(10%)</p>	<p>○ 지방이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(조특법 §63)*의 최저한세 적용배제</p> <p>- <u>2년 이상</u>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</p> <p>- <u>개인사업자도 포함</u></p> <p>*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·소득세를 5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</p>	
<p>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(소득세법 §56의 2 ①)</p>	<p>○ 기장세액공제제도 - 대상자 : 간편장부대상자</p> <p>- 기장세액공제율</p> <p>· 간편장부: 산출세액의 10% · 복식부기: 산출세액의 10%</p>	<p>○ 기장세액공제제도</p> <p>- <u>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</u></p> <p>· 간편장부: 산출세액의 10% · 복식부기: 산출세액의 15%</p>	<p>○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</p>

	* 100만원 한도	* 100만원 한도	
<b>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</b> (소득세법 §52 ①)	○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(정액공제) 적용  - 근로자 : 100만원 - 사업자 : 60만원  * 특별공제 제도 · 근로자 : 의료비, 기부금 등 · 사업자 : 기부금공제	○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 - 근로자: <u>현행 유지</u> - <u>성실사업자* : 100만원</u>  *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-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,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- 사업용계좌 개설 - 장부기장 - 신용카드사용·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을 것 등	○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
<b>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</b> (국세기본법 §81의 5)	<u>&lt;신 설&gt;</u>	○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 <u>사 면제(정기조사시)</u> 다만,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<u>&lt;면제대상 : 시행령 신설 예정&gt;</u>	○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

### (3) 지원내용 축소

감면제도	종 전	현 행	개정사유
<b>창투 조합 출자 소득공제</b> (조특법 §16)	○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한국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5%를 소득공제  ○ 일몰시한 : 2006.12.31	○ 투자금액의 <u>10%로 축소</u>  ○ 일몰연장 : 2008.12.31	○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, 실효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축소

### (4) 폐 지

감면제도	주요 조세지원 내용	폐지사유
<b>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 손실준비금</b>	○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이 소득금액의 30% 범위 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할 경우	○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

<p><b>손금산입</b> (조특법 §8의 2)</p>	<p>이를 손금에 산입 - 준비금은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,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일시에 익금에 환입</p>	<p>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</p>
<p><b>연구및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</b> (조특법 §9)</p>	<p>○ 미래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수입금액의 3%(부품·소재산업 등은 5%)를 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 * 사용액: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환입 미사용액 : 3년내 미사용액은 이차상당가산액과 함께 일시 익금환입</p>	
<p><b>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 특례</b> (조특법 §30의 2, §30의 3)</p>	<p>○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창업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의 50~100%를 감면  ○ 사업개시 또는 설립등기 이후 2 사업연도간 발생하는 결손금 : 7년간 이월공제  * 일반법인 : 5년</p>	<p>○ 실효성이 낮아 폐지</p>